

1. 개정이유

종전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해사안전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서류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

라.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한 안전투자 공시대상자, 안전투자의 범위·항목, 안전투자의 공시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6조).

1) 안전투자 공시대상자의 범위를 「해운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해운법」 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로 규정함.

2)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은 선박관리, 인적자원관리, 안전품질관리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세부 공시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

도록 함.

3) 공시의무자는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안전투자내역을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함.

마. 해양안전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한 포상 기준과 방법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사안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이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2.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3. 선박의 위치 및 입출항에 관한 정보
4. 선박 점검·검사 및 심사에 관한 정보

5. 선박 운용 관련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6. 선원의 면허, 교육 및 승선·하선에 관한 정보
7.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
8. 해운업·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9. 항로, 수로 및 항만 등 해양 공간에 관한 정보
10. 해상 교량, 방파제 등 해상시설에 관한 정보
11. 항로표지 등 항행안전시설과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12.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
1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등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정보
14. 그 밖에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제5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2.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정부의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 명령을 받은 선

박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하는 선박안전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해당 선박의 명세: 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상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사항을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알릴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제60조제2항·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두꺼측정지정업체·선급법인·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6조(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관리

- 가. 노후선 교체를 위한 신규선박 건조 및 중고선 대체 도입
- 나. 선박상태 유지관리
- 다. 선박 안전·보건 유지관리
- 라. 여객용 안전시설 유지관리(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적자원관리

- 가. 선박안전관리 조직 운영
- 나. 해상종사자·직원의 교육훈련 시행

3. 안전품질관리

- 가. 선박 안전품질경영체계 구축·운영

나. 선박안전 캠페인 및 홍보활동

다. 안전관리 지원용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기타 안전지출

③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는 매년 6월말까지 전
년도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해양교통
안전정보관리체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의 공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포상의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포상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단체 및 개인을 구분하여 각
각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부터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비고 제4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문인력 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1부 3.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해양수산부	➔	서류 검토 및 지정 여부심사 해양수산부	➔	결정 해양수산부	➔	지정서 발급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해사안전기본법</u>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사안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 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이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32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1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1.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2.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외국정부의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 명령을 받은 선박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하는 선박안전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 설>

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

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1.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2.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정부의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 명령을 받은 선박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하는 선박안전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6조(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관리

가. 노후선 교체를 위한 신규 선박 건조 및 중고선 대체 도입

나. 선박상태 유지관리

다. 선박 안전·보건 유지관리

라. 여객용 안전시설 유지관리(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한다)

2. 인적자원관리

가. 선박안전관리 조직 운영

나. 해상종사자·직원의 교육
훈련 시행

3. 안전품질관리

가. 선박 안전품질경영체계
구축·운영

나. 선박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다. 안전관리 지원용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기타 안
전지출

③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공
시의무자”라 한다)는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의 안전투자 내
역을 공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
14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해
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및 해
당 공시의무자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의
공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한다.

제7조(포상의 기준 등) ① 해양수

<신 설>

<신 설>	산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포상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단체 및 개인을 구분하여 각각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부터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